공무원 휴가제도

- 1. 1.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4 조 내지 제 24 조의 3 및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
- 2. 2.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, 연가·병가·공가·특별휴가 등을 총칭함

여가

- 정신적·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
-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(최대 20일 한도)
-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

병가

-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- 일반병가 : 연 60 일 이내
- 공무상병가 : 연 180일 이내,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
- 병가의 운영방법
 - 。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가능
 - 。 **7**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**6**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「의료법」제 **17** 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
 -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(승인권자)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

공가

-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
- 공가의 종류(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9 조)
 - 。 「병역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
 -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, 법원,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
 -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
 - 。 승진시험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
 - 。 원격지(遠隔地)로 전보(轉補)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129 조부터 제 131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 52 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결핵예방법」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
 -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

- 。 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」 제 32 조제 5 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
- 올림픽,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
- 。 천재지변,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-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 9 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(選任)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 17 조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 17 조에 따른 대의원회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, 연 1 회로 한정한다)에 참석할 때
-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「검역법」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 1 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4 조 또는 제 25 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 42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

특별휴가

-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
- 특별휴가의 종류(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0 조)
 - 1.경조사휴가 : 결혼, 배우자 출산, 사망, 입양시 부여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출산	배우자	1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.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	1
입양	본인	20

。 2.출산휴가

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·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(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)

o 3.유·사산 휴가

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

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 주 이내	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 일까지
임신기간이 16 주 이상 21 주 이내	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 일까지
임신기간이 22 주 이상 27 주 이내	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 일까지
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	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 일까지

공무원 휴가일수

연가 : 재직기간별 연가일수

재직기간	연가일수	재직기간	연가일수
1 개월 이상 1년 미만	11 일	4년 이상 5년 미만	17 일
1년 이상 2년 미만	12 일	5년 이상 6년 미만	20 일
2년 이상 3년 미만	14 일	6년 이상	21 일
3년 이상 4년 미만	15 일	-	-

연가 :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

재직기간	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
1년 미만	5 일
1 년 이상 2년 미만	6 일
2 년 이상 3 년 미만	7 일
3 년 이상 4년 미만	8 일
4년 이상	10 일